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의결서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감사원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장(최재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최 재 해

직 위 : 감사원장

탄핵소추사유

I.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피소추자는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2002년 감사원

에 입사하여 2009년 감사원장 비서실장, 2011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14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2021년 11월 12일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 나아가 2023년 7월 5일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헌법 제86조)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행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및 감사원법 제2조(지위), 제12조(의결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둘째,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감사원법 제2조(지위), 감사원법 제12조(의결사항),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35조(고발),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6조(무고),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07조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24조(강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 또, 특정 성향의 감사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감사원법 제2조(지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등)를 위반한 것이다.

넷째,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

용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

II. 탄핵을 규정한 헌법 및 법률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위공직자인 감사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탄핵 심판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

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Ⅲ. 피소추자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의를 하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의 역할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원의 지위를 명백히 부정했다.

피소추자는 2023년 7월 5일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현행 법률상 감사원 직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회계검사 중에서도 보조금·출연금 등 선택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3조)에 관해서만 검사를 요구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행정규칙인 훈령 개정을 통해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감사청구권을 대통령 보좌 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부여했다. 여기에 더해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 시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까지 명시적으로 담아,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한 감사원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감사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2023년 8월 감사원은 ‘감사원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업무계획을 수립했다. 그 핵심 내용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명시했다. 이는 국무총리를 매개로 감사원으로 하여금 행정부가 요구하는

감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직무에 있어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려 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하고자 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 관련 정보·자료 등 감사자료를 해당 감사 뿐만 아니라 타 감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봐주기 감사 비판을 방어하며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현 정권의 의혹을 두둔하는 발언을¹⁾ 일삼고 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봐주기로 일관하는 동시에,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으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렇듯, 현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겼는데도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수사의뢰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에 관

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를 몰각했다.

피소추자는 직무상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발언과 행위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감사원법 제2조 위반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 기관 등의 회계와 행정기관 사무·공무원 직무 감찰이라는 감사원 본연

의 임무와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독립의 지위’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독립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등 헌법 제7조와 감사원법 제2조를 위반했다.

나. 헌법 제100조, 감사원법 제2조, 제12조, 제23조, 형법 제123조 위반

헌법 제100조는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등 감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23조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법률에서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감사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훈령을 통해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는 감사원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인 훈령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하고 감사원과 국무총리가 이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공공기관·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을 동원한 표적 감사를 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듯 감사원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사항을 하위규정인 훈령으로 변경하여 감사원법 제23조를 위반했다. 또한, 감사정책 등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감사원법 제12조와 감사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제100조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또한 이 과정에서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

2. 피소추자의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감사

(1) 쟁점

가. 사퇴압박 정치적 표적감사(감사목적의 위법성)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감사를 진행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대해 이례적으로 1년만인 2022년에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개시하였다.

당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아직 법률에 정해진 임기가 남아있는 지난 정

부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공공기관장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등, 임기만료 전 사퇴를 공공연하게 압박해 왔다. 이에 견디다 못한 여러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를 하였고, 권익위원장은 정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법률에 정해진 권익위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임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소추자는 권익위에 대해 통상의 정책감사나 회계검사와는 성격이 다른, 매우 이례적인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였다.²⁾

피소추자는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가 아니라 제보와 언론보도로 인해 감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이미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된 많은 경우에 관련된 다른 부처 장관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권익위원장에 대해서처럼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표적감사를 개시했던 사례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형법 제123조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수사를 목적으로 권익위에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감사개시의 위법성(감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등)

감사원 운영규칙에 의하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에 관하여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감사원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제5호(시정요구), 제7호(권고), 제8호(재심의), 제10호(심사청구결정) 및 제11호(의견표시)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에 한정되며,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원장의 권한 범위 내의 업무를 위임전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원장에 대해 이루어진 표적감사는 감사원이 정권차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요구에 부응한 감사로 중요 감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감사라 할 수 없는 해당 표적감사는 감사원법상 주요 감사로, 감사 개시를 위해서는 감사원법상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법 제12조제1항제1호) 피소추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또한, 아무런 사전 예고도 하지 않은 채(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3조) 느닷없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특별조사관 10명을 보내 이례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감사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여 두 달여 동안 권익위에 대한 고강도의 강압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감사원의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도출하는 감사위원회의라는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스스로 무너뜨렸다.

또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예고통지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피소추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였으므로, 통지 관련 절차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

다. 수사요청의 위법성(감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1항).

피소추자는 권익위원장에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1. 권익위원장의 추미애장관의 이해충돌여부 유권해석과 서해공무원 피격 관련 유권해석사안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대검에 수사요청하였다. 피소추자가 감사원법상 규정된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는 채로 명백히 불법한 수사의뢰이며, 법률상 의무없는 불법적 검찰수사를 요청하게 한 피소추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불법적 수사요청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소추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라. 감사대상의 위법성(법적근거 없는 대상에 대한 감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직무감찰) 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 대상으로 한다.

4. 준사법적 행위

장관급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감사원이 권익위원장 복무기장 관련 근태감사를 하더라도 아무 징계를 할 수 없고, 근태감사의 결과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라서 형사고발도 할 수 없다.

또한 권익위의 소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권익위의 고유정책 업무로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이 그 해석의 당부 여부에 관여할 수 없고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도

기관의 정책 당부는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권익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석권한을 가지는 권익위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외부기관인 감사원이 문제삼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감사원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감사라 할 것이다.

마. 감사진행의 위법성(직권남용 등)

1) 감사과정의 위법성(직권남용죄 성립)

가) 권익위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강요

2달여간의 권익위 감사기간 동안 감사원의 특별조사국 소속 10명의 조사관들은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털어놓으라는 식의 반복적, 강압적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문답서 건수만 218건, 자료는 수천장에 달하며 권익위 직원들의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며 살살이 터는 압박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원 조사관들은, 권익위원장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

고 진술하는 권익위 직원들의 진술답변 그대로 확인서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직원들을 조사실로 소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신들이 의도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마치 표적인 권익위원장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정해진 각본대로 짜맞추는 식의 강압적 조사를 자행하였다.

나) 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와 같이 피소추자는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법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자행하는 등, 과도한 감사로 권익위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당시 이정희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퇴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2022년 8월 31일에 사퇴하게 하였다.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직권남용죄 성립

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례에서, 새로운 정권에서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던 임기가 남은 공직자인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새로운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이 지시한

복무기강 표적감사의 개시로 강한 압박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자, 이에 이르게 한 환경부 장관의 감사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도13541 판결)의 입장에 따라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라)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피소추자는 제보내용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권익위 고위직이 제보를 한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허위나 무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에 착수하거나 피감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감사 시작 전 아무런 진실규명도 없이 단지 제보에 근거하여 권익위원장이 오후에 출근하며 상습지각을 한다는 등을 언론에 누설하고, 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권익위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공표함으로써 권익위원장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유발시켰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소추자는 감사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가 없는 한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나, 불법성이 있다고 확정도 안 된 권익위원장 수행직원의 출장비 수백건 횡령 의혹 피감사실을 누설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고 외부로 유포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였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당사자인 권익위원장과 수행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감사보고서의 불법적 공개(감사위원들의 열람 없는 불법적 공개 - 공전자기록 위작죄)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도록 의결된 건에 대해서만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할 수 있으며,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총 4차례 수정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수정된 보고서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

위원이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전산부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2023년 6월 9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었고, 이는 피소추자가 전산부서를 통해 시스템상 주심 감사위원이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를 열람·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임에 따라 주심위원이 해당 감사결과보고서 최종 문안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무처에 의해 140여자 수정된 문안으로 발표됐다. 이는 합의부 판사들의 동의 없이 법원 주사가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당연무효와 같다 할 것이다.

3)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의 자행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익위 특별감사가 단지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닌 권익위원회 업무와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를 시행할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 소관업무인 ‘강원도 양구군 편치불마을 집단민원’, ‘가사도 집단민원’ 등 집단민원 해결 사안들에 대한 감사 등 다수의 별건감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우연히 확인된 경미한 실수 등으로부터 비롯된 사안들에 대한 감사

까지 진행하는 등 불법 별건감사를 자행하였다.

감사원 사무규칙 제6조에 따라 감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권익위원장에 관한 비위의혹에 대한 내부 권익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의 목적달성 필요범위 내인 위원장에 대한 특정감사만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위와 같이 별건감사를 자행한 것은, 애초에 권익위원장의 사퇴압박 표적감사가 정치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법적으로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마치 감사원 감사가 처음부터 권익위원장 표적감사가 아니라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감사의 목적으로 권익위 감사에 돌입했다는 위장을 하기 위한 끼워넣기식 불법 목적의 별건감사였다 할 것이다.

이는 처음 감사 종료 후 갑자기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별건으로 복무기강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함으로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별건 감사의 경우

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50조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6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피소추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감사원법상 감사대상도 아닌 권익위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감사의 기본원칙 위반

감사원이 감사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규정

한 「감사원법」 제50조 제2항,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13조 등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목적 달성에 필요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 수행 시 인권침해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감사절차와 기준은 모든 감사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적용 및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감사실시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감사 목적달성 필요범위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과 관련한 근태문제, 업추비 사용 등 제보 관련 내용만 감사해야 함에도, 별건감사를 진행하였고,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과도하고 강압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기간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연장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찰을 위해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게 감사 실시 사전 예고통지를 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권익위 소관 고유업무인 집단민원사건과 유권해석의 당부 등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원 관련 법령상 감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감사원법 제12조 위반 및 형법 제156조 무고의 죄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 제1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고발을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하는 대인감사는 주요감사에 해당되므로, 피소추자가 감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하였다. 또

한, 이미 두 번의 기간 연장으로 두 달여에 걸쳐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언과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기에 권익위원장에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고, 감사대상이었던 권익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감사원법 제12조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러한 불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혐의 불문 결정으로 종결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소추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까지 범하였다 할 것이다.

마.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권익위원장과 관련된 사유 외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인 강원도 양구군 편치불마을 집단민원, 가사도 집단민원 등 집단민원해결 사안들에 대해 감사 등 다수의 별건 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 도중 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사유를 찾아내지 못하자 조사과정에서 우연히 확인된 청탁금지법 관련 사안이나 경력직 민간채용절차 등 직원들의 단순 실수나 경미한 착오 등을 문제삼아 과도하게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소추자는 감사원법을 위반하여 감사권에 권한 없는 사항을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으며, 권익위 직원들을 수차례 소환하여 감사원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제4호에 따라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문제와 관련, 다른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같은 근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권익위원장에게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출퇴근시간 근태기준을 적용하여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목표로 근태감사를 한 데 반해, 다른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는 근태감사를 하지 않아 감사기준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감사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감사 직무를 유기하였다.

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

훼손), 감사원법 제27조 위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27조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에서 알게 된 피감정보와 피감사실을 해당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감사과정에서 획득한 피감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외부기관에 알리거나 공유하는 등의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과정과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감사원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특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감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명확한 물적 증거도 없는 권익위원장의 근태,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한 의혹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감사원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며, 해당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권익위원장과 수행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아.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를 진행하면서 애초 목적인 표적인 권익위원장 관련 사안들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되고 뜻대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감사기간을 2차례나 더 연장했다.

피소추자가 이례적으로 명분 없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권익위원장을 사퇴할 때까지 감사를 통해 압박하고,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감사를 한 것은 권익위원장과 직원들에 대한 각각의 협박 또는 강요의 범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자. 형법 제155조(모해증거인멸·위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위반

형법 제155조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해당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10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권익위원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와 증인을 인멸하고 조작하였으며,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인 피소추자가 감사위원회 재심결정에 관여한 것은 명백히 사적이해관계자인 본인이 직무관련자로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차.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도록

사전에 의결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만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는 법원으로 따지면 판결문과 같은 문서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및 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전산부서에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아예 ‘열람’, ‘반려’ 등 결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감사원 인터넷 시스템을 조작하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참고자료 ⑬ 참조).

이로써 피소추자는 감사원 전산부서로 하여금 시스템상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결재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3. 피소추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감사원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의무

가 있다.

(1)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관련

가. 사건경위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10월 25일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11월 8일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11월 17일 시민 5,587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 등과 계약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관저 등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였다.

12월 1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네 가지 국민감사청구 사항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와 ‘대통령실·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12월 15일 참여연대는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신받았다.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국민감사청구 대상 네 가지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와 ‘대통령실·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를 통보받았다.

2024년 9월 12일 감사원은 해당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 보고서 도입부에는 감사원이 참여연대에 회신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과 동일하게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본문에는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내용은 전무했고,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범위

에서 제외했다”라는 문구가 본문이 아닌 각주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참여연대에 정반대되는 허위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을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감사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묵인하거나 방조했다.

나.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헌법 제7조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포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헌법 제7조를 위반했다.

2) 감사원법 제2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 제2조를 위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

3) 형법 제122조, 제123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명백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저해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법령에 따른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

4) 형법 제227조, 제229조 위반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타당성 등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감

사를 실시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발송하였다. 이는 형법 제 227조와 제229조를 위반한 것이다.

(2)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관련

가. 사건경위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6월 17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 2022년 8월경 감사위원회의 일부 감사위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감사라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2022년 10월 5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자 보도참고자료까지 배포하여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피소추자는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공개적인 검찰 수

사요청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우회하였고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공개하였다.

또한, 2022년 10월 14일 보도자료 배포의 형식을 빌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는데, 감사원 법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20명의 사람들은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이와 같은 수사 요청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는 인식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해당 감사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벌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악용한 것이 분명하다. 설령 피소추자의 주장처럼 실제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다면, 언론

을 통한 수사요청 계획 발표는 감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하도록 미리 알려준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불법적이고 부당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사원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다.”라고 했지만, 10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측 기관증인은 “중국 어선이 (이대준씨) 주변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10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방정보본부 측 기관증인은 “중국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인지도, (이대준씨) 탑승 여부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렇듯 감사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공세를 펴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1급 군사기밀인 특별취급정보(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하는 내용인 “피격 공무원이 간자체로 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점을 숨긴 것이 근거라고 제시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

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1급 군사기밀인 특별취급정보(Special Intelligence)에 해당하는 내용을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에 포함하여 작성·배포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

2) 감사원법 제35조 위반

감사원법 제35조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1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를 통해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신원이 확실하고 따라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려운 20명의 사람들에게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이는 감사가 종료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감사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3) 형법 제123조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작성 시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및 군사기밀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

(3) 이태원참사 감사 관련

가. 사건경위

피소추자는 2023년 1월 12일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열었고, 해당 회의에서 피소추자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사원 사무처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회의는 연내 감사계획을 의결하는 자리였고, 해당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연내 감사 시점이었다. 이 회의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감사위원 상당수는 가급적 조기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피소추자는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

하지 말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이태원 참사 건에 관련한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23년 2월 1일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2월 17일 경향신문이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자, 보도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경향신문의 보도는 오보이며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계획이 수립된 것이 알려질 경우, 조기 감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했다.

나.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포 등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등 헌법 제7조를 위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국민을 속이고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

2) 형법 제122조, 제123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는 과정 및 2023년 2월 17일 경향신문이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해놓고 ‘계획 없다’ 거짓말한 감사원”이라고 보도하자,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를 위반했다.

3) 형법 제227조, 제229조 위반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이태원 참사 건에 관련한 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1일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이

태원 참사 건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2월 17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태원 참사 감사 의결해놓고 ‘계획 없다’ 거짓말 한 감사원”은 오보라며,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형법 제227조와 제229조를 위반한 것이다.

(4) 전자문서 시스템 조작 관련

가. 사건경위

2023년 6월 9일 오후, 모든 감사위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회의록 3차 수정안을 열람하였으나 주심위원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피소추자의 승인아래 ‘감사보고서 시행요건 변경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전산상의 결재를 생략하고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주심위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IT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했다.

2023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보고서 시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IT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뚫어 버리자라는 결정을 하셨어요. 이걸 쿠데타예요. 이 과정을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셨어요?”라고 질의하자 감사원 사무총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에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이 오케이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라고 재차 묻자 감사원 사무총장은 “예”라고 반복하여 답변했다.

그러자 피소추자는 국회의원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발언기회를 얻은 후 “어차피 이 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사람의 합의로원에서 나가기 어렵다, 두 사람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원래 안이, 대부분이 4표입니다. 4표 내지 5표인데 4표 정도의 수용이 된 안이기 때문에 그 수용한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의 의견만 합치가 되면 이것은 위원회 의결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그 수용이 된 안이 형성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해도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방침을 줬고요.”라고 답변하며 사실상 IT시스템 고의 조작을 자백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66조(감사결과의 시행)에 따라 감사보고서 최종본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

행해야 함에도, 피소추자는 IT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 감사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했다.

나.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주심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고의로 IT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지시 또는 승인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2) 형법 제123조, 제227조의2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법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위해 IT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하게 하는 등 감사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 제227조의2를 위반했다.

(5)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 관련

가. 사건경위

감사원은 2019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의 지휘하에 재감사를 벌인 다음 2020년 10월 “2018년 6월 월성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자부 전 국장, 과장, 서기관 3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방해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감사원이 위 3인을 고발한 내용은, 2019년 11월경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 묵인하고, 2019년 12월 1일 23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위 3인을 감사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4년 1월 9일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이 2019년 12월 2일경 위 공무원들이 사용한 컴퓨터에 대하여 한 디지털 포렌식은 감사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3노41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나.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헌법 제12조 및 감사원법 제27조 위반

헌법 제12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영역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서, 이는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감사원의 감사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원 감사의 기본원칙인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아니한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성 및 관련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감사원법 및 관련 규정에 반한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법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 제12조, 감사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2조, 비례성과 보충성 원칙에 관한 감사원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감사를 지시 또는 승인하고 감

독을 하지 아니한 등 공무원으로서 법령준수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3) 형법 제123조, 제156조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는 당시 정부 차원의 최대 관심사였고, 장기간에 걸쳐 전방위적인 감사 및 이례적인 재감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감사원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사안이었던바,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헌법 및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피감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감사결과의 성

과에 급급한 나머지 그와 같은 위법한 감사에 근거하여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도 없이 당시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과 공모하여 위 공무원들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의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하여 형법 제123조 및 형법 제156조를 위반하였다.

(6) 감사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7월 1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하여 ‘자녀 특혜 채용’ 감사에 착수하여 9개월 넘게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선관위가 포렌식에 응하지 않자 PC를 봉인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하며, 선관위 대상으로 첫 직무감사를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감사원법 제24조 위반 및 감사원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직권남용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4. 피소추자의 자료제출 거부

(1) 사건의 경위

국회와 위원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장인 피소추자는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피소추자는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 및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수 없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① 2024. 9.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 10. 15. 감사원 국정감사일에 피소추자를 출석할 기관증인으로 의결하였고, 피소추자는 해당일에 출석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실에서

지난 6월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을 국정감사 당일까지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 10. 15. 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회의록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 2024. 10. 24. 15:00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피소추자 및 관계자들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되었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

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회가 요구한 증언이나 서류등을 제출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동법 제12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증언이나 서류등을 제출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가 법률에 따라 국회로부

터 요구받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나. 형법 제122조, 제123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두 형법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IV.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1.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헌법은 비록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감사원의 직무와 기능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감사원은 헌법상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감사원법도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며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내제 제10조).

2.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등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및 정치적 중립성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을 하고, 실제로 법률에 근거없는 위법한 훈령을 개정하는가 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감사대상이 아닌 감사를 개시하고, 감사과정에서도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으로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구성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감사원을 마치 독립제 기관처럼 위법하게 운영하였으며,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들 및 피감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도 수행한 것처럼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헌법상 국가기관의 행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감사원은 감사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등 국가권력의 비위나 위법을 감시함으로써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감사원의 감사권한은 위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며, 이를 위해서 특별히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존재이유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국가권력의 비위나 위법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감사·불법감사·부실감사를 통하여 권력의 비위나 위법행위를 비호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감사권한을 오·남용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형해화하고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한편, 헌법상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

고 유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피소추자는 누구보다도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조차 거부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 기초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 등 국정통제기능을 훼손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피소추자의 직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또한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국가기능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익 침해 또한 중대하다. 피소추자가 보인 언행과 위법행위로 인하여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위와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 상실되었다.

3. 피소추자의 파면의 필요성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권한을 더이상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과 법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감사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피소추자는 이러한 비판과 지적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더이상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두고볼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피소추자의 지속적인 헌법·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을 의결함으로써 피소추자를 직무에서 배

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

1. 감사원 자료요구 화면 및 제출 답변
2. 2022.7.29. 감사원 전체회의 법사위 회의록
3. 2024.10.15. 감사원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록
4. 2023.6.29. 경향신문, 「감사원, 훈령 바뀌 총리에 ‘감사청구권’… ‘독립 지위’ 감사원법 취지 역행」
5. 2023.6.29. 경향신문, 「감사원 독립성에 스스로 구멍낸 감사원…‘인수위→사무총장’ 유병호 취임 뒤 일사천리 훈령 개정」
6. 2024.9.27. 한겨레, 「[단독] ‘윤 관저 이전 의사결정’ 조사 1년8개월 끌어뭉갠 감사원」
7. 2023.6.28. 경향신문, 「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 없다” 거짓 언론브리핑」
8. 2024.10.24. 한겨레, 「[현장] “관저 공간, 뭘 숨기나”…감사원 ‘회의록 열람’ 총력 저지」
9. 2022.7.29. 조선비즈, 「최재해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논란…김도읍 “귀를 의심”」
10. 2022.8.5. 노컷뉴스, 「권익위 근태 본다는 감사원, 감사원장 근태 자료는 없다?」

11. 2024.10.15. 한겨레, 「'감사원 독립성' 부정한 최재해, 2년 지나도 "감사 통해 국정지원"」
12. 2023.6.2. KBS 뉴스, 「감사원, 전현희 감사결과 의결...전현희 "사실상 무혐의, 사필귀정"」
13. 2023.10.19. 뉴스버스, 「쑥대밭 된 감사원...내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14. 2023.6.28. 감사원 보도참고자료
15. 2024.5.9. 한겨레, 「유병호 주도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16. 2024.5.10. 법률신문, 「[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17. 2024.11.28. 한겨레, 「감사원, '형사책임 소명' 경호처에 넘겨...‘유령관저’ 수사 불가피」

1) 최근 1년8개월간 진행한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70㎡짜리 신축 건물이 통째로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2024-11-29, <감사원, '형사책임 소명' 경호처에 넘겨...‘유령관저’ 수사 불가피>

2) 감사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업추비 법카사용 오마카세 접대문제 등 청탁금지법 위반의혹사건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었던 다른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많은 언론보도나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들을 표적으로 하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음